

보도시점 2026. 7. 8.(수) 조간 배포 2026. 7. 7.(화)
2026. 7. 7.(화) 12:00

‘치매 어르신 재산 안전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체결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중앙치매센터,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체계 본격 가동 -
- 유형에 따른 맞춤 재산관리로 인지저하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 보장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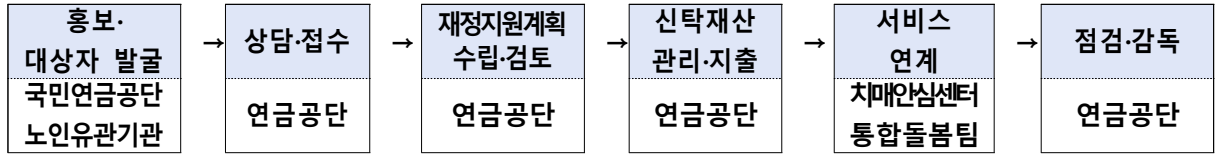
7.3.(금) 기준 문의 1,271건(545명), 신청 118건, 심층 상담 34건, 계약 체결은 4건이며 14명이 후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 5월 기준 문의 473건(197명), 신청 34건, 심층 상담 4건으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

- ▶ 목적 : 치매 등으로 인해 경제적 착취나 재산 오남용 위험에서 벗어나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통해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
- ▶ 사업 내용 :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근거한 의료비, 필요물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
* 치매진단 이후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이 공공기관과 신탁계약 체결
- ▶ 이용대상 :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포함
- 시범사업 기간 동안 무료이며, 본사업 전환에 따라 이용료가 부과될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가능
- ▶ 사업 절차 : 연금공단·노인유관기관 홍보·대상자 발굴 → 연금공단 상담·접수 → 연금공단 재정지원 계획 수립·검토 → 치매안심센터·통합돌봄 전담부서 서비스 연계 → 연금공단 점검·감독
- 이용자의 의사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여러 번의 상담을 거치고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1~2개월 소요

-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는 치매환자라면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원 심리 등의 절차로 2~3개월 추가 필요



[계약 체결 사례]

가명	신청 경로	신청 사유	거주 형태	상태	가족 관계	위탁재산	재정계획
김00	안심 센터	· 주변 금전 착취 우려	독거 재가	· 치매 · 욕구 표현O, 재산관리↓	무연고	· 현금 · 정기수입 (생계급여 등) · 임대차보증금	· 월세 · 공과금 · 생활비
나00	안심 센터	· 투명한 재산관리 · 사후 재산처리	요양시설 입소	· 치매 · 의사 표현↓, 생활용품 구입 등 제한	무연고	· 현금 · 정기수입 (국민연금 등)	· 요양비 · 저축·보관
도00	안심 센터	· 투명한 재산관리 · 수술비 지출 대비	요양시설 입소	· 치매 · 자기결정 능력 없음	사실상 단절	· 현금 · 정기수입 (국민연금) · 지자체 지원금 (비정기)	· 요양비 · 용돈 · 저축·보관
류00	안심 센터	· 경제적 피해 경험 · 안전관리 희망	독거 재가	· 치매 · 의사 표현O	사실상 단절	· 현금 · 정기수입 (국민연금 등)	· 의료비 · 공과금 · 생활비

1. 김00: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계약을 체결한 독거노인 치매환자 김00은 욕구 표현은 가능하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요청하였다.

관할 치매안심센터는 김씨를 연금공단에 의뢰했고 연금공단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의 자택을 방문해 재산상황과 월 지출내역을 검토했다. 보유 재산은 현금성 자산 약 2천만 원이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급여 등 정기 수입은 월 약 120만 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김씨의 생활 욕구를 반영하였고 남은 생애 동안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유지되도록 매월 월세 33만 원, 공과금 13만 원, 생활비 80만 원을 배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후견인은 연금공단이 수립한 재정지원계획을 검토한 뒤, 본인을 지원인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김씨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월세와 공과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고 공공후견인은 소액의 생활비만 관리하면 돼 재산관리 부담이 크게 줄었다.

2. 나00, 도00: 후견인의 부담은 줄이고, 재산관리는 더 안전하게

한편, 치매환자 나00씨는 의사결정능력이 낮고, 가족도 없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공공후견인이 재산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 월 40만 원을 정기적으로 수령해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치매안심센터는 공공후견인의 활동 종료* 후 나씨의 재산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대상자의 사망 후 잔여재산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를 의뢰하였다.

* 치매안심센터의 공공후견사업은 특정후견 유형으로, 3년 단위로 활동하고 종료 시 갱신여부 및 추가 심판청구를 검토

연금공단은 공공후견인과 함께 심층상담을 진행하여 10만 원 내외의 요양비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한편, 남은 월 25만 원의 금액은 안전하게 저축·보관해 향후 수술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요양비는 공단이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요양시설에 지급하고 그 외의 재산은 연금공단의 관리 아래 안전하게 보호관리된다. 수술비 등 거액의 지출이 나갈 것을 대비하여 일정 금액이 저축된다.

나씨의 후견인은 요양시설 지출 부담을 덜게 되었고, 사망 후 잔여재산 처리도 연금공단이 지원해 잔여재산 처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나씨와 유사하게 도00씨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이다. 대리인·지원인은 후견인이며, 수술비를 대비해 비상금을 저축할 수 있게 되어 재산 안전망이 강화되었다. ※ 류씨의 사례는 붙임3 참조

3. 신청 이후: 연금공단의 꼼꼼한 점검

계약이 체결되면 연금공단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용돈 등 자율지출 항목은 개인 계좌로 지급하되 지원인이 월별 지출 내역을 제출해 관리한다.

수술비와 같이 계획에 없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지출인 경우 후견인은 연금공단에 특별지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금공단이 신속하게 지급한다. 다만,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연금공단은 관리수탁자로서,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출내역서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지원인 또는 대리인의 남용이 확인되면 지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민법 제1053조~제1059조에 따른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연금공단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청산 공고 및 수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약 1년 이상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상속권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잔여 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유형별 상담사례]

< 유형별 상담 사례 정리 >

구 분	주요 상태	대표 욕구	기대 효과
본인 신청형	· 경도인지장애	· 배우자도 노령 등으로 재산관리 제약 · 치매 발생 후 재산관리 문제 대비	· 인지저하가 심해져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재산관리 가능
가족 신청형	· 치매 · 재가/시설 · 친족이 원거리 거주	· 통장 분실로 모친의 재산을 사용할 수 없음 · 가족 간 재산관리에 대한 갈등	· 병원비 납부 등 정기적 지출에 대한 자녀 부담 감소 · 투명한 재산관리로 치매환자 재산의 금전지출에 대한 가족 간 다툼 발생 방지
유관기관의뢰형	치매안심센터	· 주변의 재산갈취 등 경제적 피해 위험 · 보이스피싱 등 사전 예방 제약 · 사망 시 후견인의 잔여 재산 처리 등 재산관리 어려움	· 치매환자의 보이스피싱, 갈취 등 피해 예방 · 후견인의 재산관리 부담 감소 · 대상자 사망 후 잔여재산 처리 지원
	요양시설	· 가족이 없어 시설에서 관리 · 시설에서 통장 관리 부담 및 수술 등 비상 상황 대비 필요	· 요양시설의 통장관리 부담 완화 · 투명한 지출관리, 수술 등 비상지출 대비 가능

현재 상담이 진행 중인 사례는 본인 신청형, 가족 신청형, 유관기관 의뢰형(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 신청형, 요양시설 의뢰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계약 체결을 위한 후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❶ 본인 신청형: 치매가 와도 내 뜻대로 재산 관리

본인 신청형은 본인 의사표시가 가능한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으로,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서비스를 희망한다.

상담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치매가 발생하면, 본인이 세운 계획에 따라 본인의 재산이 관리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치매 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되고, 향후 치매가 발생해도 본인의 뜻대로 재산이 관리된다.

② 가족 신청형: 가족 간 재산관리를 투명하게

가족 신청형은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로, 정기적 요양비 지출 등 관리 부담을 줄이고 자녀 간 재산 관리 갈등을 방지하고자 서비스를 신청한다.

재산 관리를 맡아오던 자녀는 재산 관리부담이 감소하고, 재산 현황은 모든 가족이 확인할 수 있어 갈등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③ 유관기관 의뢰형: 안정적인 재산·지출 관리

유관기관 의뢰형은 치매안심센터 의뢰형과 요양시설 의뢰형으로 구분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치매거점기관으로, 지역사회에 재산관리 위험이 있는 자를 발굴해 국민연금공단에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의뢰한다.

치매안심센터가 의뢰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공공후견인이 지원하는 치매 환자로, 이번 계약체결 사례에 해당한다.

한편, 치매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도 하며, 가족의 지원이 어렵고 입소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수급자에 대해 요양시설이 생활비 집행을 일부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요양시설은 재산 관리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수술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금공단의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요양시설은 배분금액을 집행하면 되고 수술비 등 비상 상황에서 공단이 함께 대응해 시설의 재산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사업을 알리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대상 대면·비대면 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대상자 발굴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중앙치매센터와 협력하여 치매안심센터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요양시설, 복지관 등에 사업을 안내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의뢰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남에게 재산을 맡기는 데 신중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5월 대비 6월 문의 건수(197명 → 513명)와 신청 건수(34건 → 109건)가 크게 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등 치매유관기관 간 사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어르신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자 전단지, 카드뉴스 등을 추가로 제작하여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계약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현장 사례를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상담·계약 절차와 유형별 지원 방식을 보완하고, 2028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첫 계약 사례는 치매 어르신들이 재산 상실 두려움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라며, “현장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일선 현장에서도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적극 연계해달라” 고 밝혔다

- <붙임> 1.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프로세스
2. 시범사업 문의 및 신청 현황

3. 유형별 상담 사례
4.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전단지(앞면)
5.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전단지(뒷면)
6.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카드뉴스(O/X)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최승현	(044-202-3530)
		담당자	사무관	장홍준	(044-202-3538)
<재산관리>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지원추진단	책임자	부 장	박찬석	(063-713-7440)
		담당자	차 장	이재헌	(063-713-7441)
	소통홍보실 언론홍보부	책임자	부 장	장원주	(063-713-5430)
		담당자	차 장	김성한	(063-713-5435)
<공공후견>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팀	책임자	팀 장	최선영	(02-6260-3160)
		담당자	변호사	문은정	(02-6260-3161)



붙임 1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프로세스

업무 흐름	세 부 내 용	주 체
서비스 홍보 대상자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 홍보(리플렛 배부, 옥외광고, 기고 등) • 주요 기관(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양로시설 등) 중심으로 시범사업 서비스 대상자 발굴 	치매센터 (중앙, 기초 등) 요양협회 연금공단 지사
상담·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보유정도, 거주환경 등 각종 정보 조사 및 초기상담 • 개별 욕구 및 의사결정능력 수준 등 확인 • 친족, 후견인 등 보호자와 협의 	연금공단 지역본부
재정지원계획 수립·검토 신탁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된 정보와 욕구를 바탕으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지원인과 대리인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입원·진료 동의, 요양시설 입소 동의 등 주요사항을 결정, 신상 활동을 대리하는 자로 친족, 후견인, 후견인 후보자 등이 후보 (지원인) 타인계좌 지출증빙 등 집행내역 점검 협조, 특별지출 시 증빙자료 구비 등 배분계획 집행을 지원하는 자로 친족, 시설종사자 등이 대표적 • 재정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위탁자(수익자)와 수탁자 간 계약 체결 및 본부의 계약서 적합성 심의·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기본계약서와 개별사항이 적시된 개별 계약서 작성 ** 노노가구인 경우 배우자를 연속수익자로 지정 가능(서비스 단절 방지) • 대상자가 치매환자로 확인되면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신탁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는 후견인 선임 	연금공단 지역본부 본부
위탁재산 지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을 바탕으로 공단이 생활비, 요양비 등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인이 타인계좌 이체 등 월별 지출내역 보고 • 특별지출, 계약철회 등 주요사항 결정 시 연금공단 산하 위원회가 심의 후 배분 • 사망 후 잔여재산을 정산하여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 	연금공단 지역본부
서비스 연계 점검·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서비스 필요 시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 전담부서 등에 의뢰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연금공단은 배분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등 월별 집행 내역 점검 및 부정사용 모니터링 •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하여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지출 확인 시 불시점검 	연금공단 지역본부

□ **주요 문의 내용**

- 주로 자녀가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재산을 요양비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상담
- 위탁 가능 재산범위, 지출을 위한 배분 방식, 사후 잔여재산 처리 방법이 주요 문의사항으로,
 - 치매환자의 경우 계약 체결을 위해 후견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후견인 선임 절차, 후견제도와 차이점 등도 문의

□ **현황**

- 7.3.(금) 기준 문의 1,271건(545명), 상담 신청·의뢰 118명
 - 34명이 심층 상담 중이며, 4명 계약체결(치매환자 14명은 계약체결을 위한 후견인 선임 절차 진행 중)

<시범사업 운영 현황>

(단위: 건(명), 누적)

기준	문의	신청·의뢰	진행 경과				
			기초 상담	심층 상담	재정지원계획 수립	계약체결	기타*
5월	473(197)	34	22	4	-	-	8
6월	1,187(513)	109	46	29	2	2	30
7.3(금)	1,271(545)	118	48	34	0	4	32

* 기초상담 결과 대상이 아니거나 본인이나 가족 반대 등으로 신청·의뢰를 철회한 경우

※ 대상자 정보는 가명처리됨

1. 본인 신청형: 치매가 와도 내 뜻대로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민00씨는 노인부부가구로 현재 재산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향후 건강 악화에 대비해 재산관리서비스를 신청하였다.

민씨는 앞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더라도 본인의 뜻에 따라 재산이 관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이 관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공단은 민씨가 인지저하가 심해지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배우자를 연속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민씨가 치매환자로 확인되는 시점에 개시될 예정이다.

현재는 상담 조율 단계로, 위탁재산과 재정지원계획은 심층상담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민씨에게 치매에 대비한 사전 준비 수단이자, 향후 치매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뜻에 따라 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2. 가족 신청형: 가족 간 투명한 재산 관리

치매환자 박00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큰아들 신00씨가 어머니의 병원비를 주로 부담하고 있었다.

신씨는 어머니 통장에 매달 기초연금 30만원이 들어오고 있고, 약 1억원 이상의 돈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통장을 분실한 상태였다. 어머니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해 은행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박씨는 병원비를 다른 형제들과 나눠 내는 것을 고민하던 중 마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실시되자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 투명한 재산관리를 위해 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연금공단은 신씨와 함께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고, 박씨의 통장에 있는 현금과 기초연금을 신탁재산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양병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지출계획을 세웠다.

계약 체결을 위해 신씨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여 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하였으며, 현재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씨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머니의 재산으로 요양비를 지출할 수 있어 신씨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다른 자녀들도 재산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가족 간 오해를 예방할 수 있다.

3. 요양시설 의뢰형: 재산 분쟁 책임 완화

치매환자 이00씨는 무연고 노인으로 경남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어 시설 종사자가 통장을 대신 관리해주고 있다. 요양원은 향후 재산 관리와 관련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연금공단에 서비스를 의뢰하였다.

이씨의 위탁재산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현금 2천만 원 등으로 용돈과 병원비가 정기적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요양원 종사자가 지원인으로서 재산 관리 지출을 보조한다.

연금공단은 시설 담당자와 함께 심층 상담을 진행한 후 치매안심센터에 계약체결 권한을 갖는 공공후견 선임을 의뢰하였고, 치매안심센터는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후견심판청구를 위한 관련 서류와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씨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박씨의 수입, 지출 등 재산 현황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요양시설은 사망 시 잔여재산 처리로 인한 법적 분쟁 등 재산관리 부담이 덜어진다.

4. 치매안심센터 의뢰형: 제3자 부당개입 차단

치매환자 류00씨는 독거노인으로, 가족이 있으나 사실상 교류가 단절된 상태이다. 과거 지인으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안전한 재산관리를 희망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의뢰하였다.

연금공단은 류씨가 의사표시가 가능한 치매환자임을 확인한 뒤, 후견인과 함께 심층 상담을 진행해 류씨의 선호를 반영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류씨의 위탁재산은 현금 3천만 원이며, 월 정기 수입 70만 원이다.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공과금 10만 원, 의료비 37만 원, 생활비 23만 원을 매월 지출하도록 했다. 류씨의 후견인은 연금공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지출항목별로 류씨 본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인이 창업 등을 이유로 금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특별지출 지급 절차에 따라 연금공단의 위원회 심의·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부당한 자금 유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의 의사와 무관한 지출이나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재산 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

인지 저하로 인해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기억이 흐려져도 내 삶과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안전하게 지원합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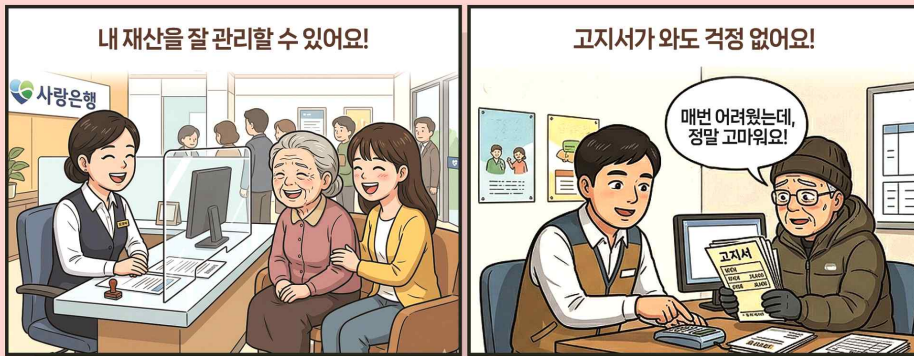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어르신의 뜻대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할 때 생활비, 병원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만나면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어르신
 ※ 65세 미만 치매환자도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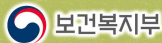
궁금해요!

- 1)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르신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2) 모든 재산을 맡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는 만큼만 선택해서 맡기실 수 있습니다.
- 3)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재산은 법에 정해진 상속인(가족)에게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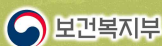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p>1. 치매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가져가려 한다</p>	<p>× 아니요</p> <p>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반드시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됩니다. 인지가 저하되더라도 나를 위해 내 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춘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산을 관리합니다!</p>
<p>2.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이용해야한다?</p>	<p>× 아니요</p> <p>강제로 가입되는 서비스가 아니며, 본인이 희망 할 경우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3.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유롭게 돈을 못쓰게 된다?</p>	<p>× 아니요</p> <p>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이용자의 상황과 의사를 반영한 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비 등 예상치 못한 중요한 지출이 생겨도 즉시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p>
<p>4. 치매안심재산관리 위원회는 치매환자의 재산을 제한하거나 통제한다</p>	<p>× 아니요</p> <p>치매안심재산관리 위원회는 재산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사기, 갈취 등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르신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 외부 전문가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p>



5. 치매에 걸리면 내 정신이 아닐텐데, 이 제도를 이용해도 소용 없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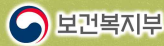
× 아니요

치매에 걸려도 어르신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으로 살피는 공공후견인을 통해 어르신의 일상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다만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 어르신의 이익을 위해 미리 설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6. 공공후견인이 정말 내 입장을 대변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공공후견인은 후견 대상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살필 수 있도록 법원 심사를 거쳐 선임되는 사람입니다.



7. 공공후견인은 가족이 하면 안되나요?

◎ 가능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이익 대변이 가능하다면 친족후견도 가능합니다. 단, 친족후견의 경우 계약후견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유의

의심하고 나라(경찰, 금감원)나 은행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전화 끊고 이상한 전화는 일단 끊고, 아는 번호로 직접 다시 걸어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재산관리서비스 관련 변경 사항은 반드시 지정된 지원인이나 연금공단 담당자를 통해서만 처리됩니다.

